

히라카타시 일반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 촉진등의 관한 조건
일부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

2013(헤이세이25)년1월1일부터 히라카타시가 회수하는 자원쓰레기등의 반출행위가 금지됩니다.

<u>대상품목</u> 자원쓰레기 【종이류・빈 캔・병・유리】 대형쓰레기 【생활쓰레기・대형쓰레기】

○히라카타시의 배출규칙에 따른, 가정에서 배출하는 자원쓰레기등을, 쓰레기장에서 시 또는 시의 위탁을 받은자 이외의 자가 수집・운반하는 것은 금지합니다.

※금지행위를 행하는 위반자는, 과료(5만엔이하)의 적용대상이 됩니다.
(과료의 적용에 대해서는, 2013(헤이세이25)년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.)

韓

히라카타 시 환경부 감량업무실
전화 072-849-7969
FAX 072-848-1821

히라카타시 일반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 촉진등의 관한 조건
일부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

2013(헤이세이25)년1월1일부터 히라카타시가 회수하는 자원쓰레기등의 반출행위가 금지됩니다.

<u>대상품목</u> 자원쓰레기 【종이류・빈 캔・병・유리】 대형쓰레기 【생활쓰레기・대형쓰레기】

○히라카타시의 배출규칙에 따른, 가정에서 배출하는 자원쓰레기등을, 쓰레기장에서 시 또는 시의 위탁을 받은자 이외의 자가 수집・운반하는 것은 금지합니다.

※금지행위를 행하는 위반자는, 과료(5만엔이하)의 적용대상이 됩니다.
(과료의 적용에 대해서는, 2013(헤이세이25)년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.)

韓

히라카타 시 환경부 감량업무실
전화 072-849-7969
FAX 072-848-1821